

1. 사업 운영계획

구 분		당년도	전년도	증감	비 고
1 연향들 개발사업	○ 연향들 도시개발사업	488,459m ²	488,459m ²	0	
2 인력관리 계 획	○ 일반직 6명	6명	6명	0	

2. 예산총칙

제1조 (총칙) 2025년도 순천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추정 손익계산서,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가 추정손익계산서

차 변		대 변	
비 용	순 이 익	수 익	순 손 실
1,200,102천원	0천원	451,854천원	748,248천원

나 추정재무상태표

차 변		대 변	
자 산	순 손 실	부 채	자 본
191,057,569천원	748,248천원	85,900,000천원	105,905,817천원

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과 목	금 액
I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△748,248천원
II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△191,057,569천원
III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191,800,000천원
IV. 현금의 증감(I + II + III)	△5,817천원
V. 기초의 현금	5,817천원
VI. 기말의 현금	0천원

제2조 (업무예정량) 업무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- 연향들 도시개발사업($488,459 m^2$)

제3조 (수익적 수입 및 지출)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수 입	
제 1 관 공영개발사업수익	451,854천원
제1항 영업외수익	451,854천원
지 출	
제 1 관 공영개발사업비용	1,200,102천원
제1항 행정운영활동	737,649천원
제2항 영업외활동	462,453천원

제4조 (계속비)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(단위:천원)

관	항	사 업 명	총 액	년 도	연 할 액
해	당	없 음			

제5조 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(단위:천원)

사 항	기 간	한 도 액
해 당	없 음	

제6조 (지방채)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,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(단위:천원)

기채 목적	한 도 액	기 채 방 법	이 자 율	상 환 방 법
해 당	없 음			

제7조 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0천원으로 정한다.

제8조 (예산전용금지과목)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(1) 인건비 | 386,373천원 |
|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| 2,480천원 |

제9조 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타 회계로부터 본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0천원이다.

제10조 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월이익잉여금 0천원과 당년도 예정이익잉여금 0천원 총 0천원중 0천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|
| (1) 이월결손보조금 | 0천원 |
| (2) 이의적립금 | 0천원 |
| (3) 감채적립금 | 0천원 |

(4) 건설개량적립금 0천원

(5) 납 부 금 0천원

제11조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(그 세부내역은 별첨 “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” 와 같다) : 해당 없음

구 분	종 류	명 칭	수 량	금 액
1. 취득자산				
2. 처분자산				

제12조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은 ×××천원으로 정한다. : 해당 없음